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김영배·복기왕·조인철

조계원 · 김태선 · 김영호

권칠승 · 강유정 · 문정복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·폐업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·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 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육시설업자 휴업·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	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		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		
	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		
	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		
	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		
	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		
	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		
	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		
	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
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40조(과태료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
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
부과한다.	,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5.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		
	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		
	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		
	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지		
	1		
	<u>아니한 자</u>		
<u>5.·6.</u> (생 략)	<u>아니한 자</u> <u>6.·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		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